



美, 日에 서비스마크 保護要請 特許 審査期間 短 위한 審査官 增員도

美國이 현재 日本이 保護하지 않는 서비스마크를 保護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8월 29일부터 美國의 하와이에서 열린 美·日 知的所有權과 관련한 실무협의회에서 美國이 日本에 대해 審査期間의 단축을 위해 審査官 증원 등 知的所有權분야에 대해 12개 사항을 요구했다.

美國이 日本에 대해 知的所有權 전반에 걸쳐 이같이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근 美國에서 발효된 종합무역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美國은 日本의 特許와 商標의 審査처리기간이 2년 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도 審査官 증원 등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우리나라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美國이 日本에 대해 요청하고 있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特許〉

▲ 審査期間 단축을 위해 審査官 증원

▲ 英語로 된 出願의 인정

▲ 特許權侵害에 관한 재판의 신속화

〈商標〉

▲ 商標登錄기간 단축을 위해 審査官 증원

▲ 서비스마크登錄制度를 마련할 것

〈貿易秘密〉

▲ 貿易秘密(Trade Secret)의 효과적인 保護制度 마련

〈著作權〉

▲ 현행 50년의 컴퓨터소프트웨어의 權利保護기간을 유지할 것

▲ 리버스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를 분해하여 研究한 결

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開發하여 보다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開發하는법)의 금지.

▲ 레코드복제권의 保護期間을 최소한 50년간으로 할 것.

▲ 著作權侵害에 대한 벌칙을 美國과 같이 강화할 것.

▲ 著作權을 侵害한 복제물을 소유한 경우도 유죄로 인정할 것.

▲ 경찰의 단속강화

EC, 八生地 명칭 保護要請 GATT 등 國際會議 통해 知所權 주장

유럽공동체(EC) 國家들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등을 통해 原產地 名稱을 새로운 知的所有權의 하나로 保護要請하고 있다.

原產地 명칭보호란 버번 위스키·스카치 위스키·아이리 위스키 등 각종 商品에 사용된 버번(Bourbon)·스코틀랜드(Scot Land)·아일랜드(Ireland) 등의 原產地 명칭에 대해 獨占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特許廳에 따르면 原產地 명칭보호 및 國際登錄을 위한 리스본협정에 加入하고 있는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공동체 國家들은 GATT 등 國際會議를

통해 原產地명칭보호를 要請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C 國家들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原產地 不法도용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의 하나로 規定토록 GATT 會員國에 壓力을 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原產地 명칭보호를 새로운 知的所有權의 하나로 定着시키기 위해 原產地명칭보호를 위한 國際條約 체결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原產地 명칭이 保護될 경우 商品權者의 許諾이 없이는 相關商品은 물론 類似商品에 대해서도 原產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